

『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」 제5조의 수상후보자 추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,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장의 필요에 따라 수상후보자 추천을 의뢰토록 되어 있는 것을 「각 부문별 관련기관·단체장」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도 기획관실-2040('06.4.3)호의 「200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계획」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선정의 객관성을 유지코자 함
-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의 수상후보자 추천 내용 중 「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」에 대한 표현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장의 필요에 의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수상후보자를 추천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「각 부문별 관련기관·단체장」에게 수상후보자를 추천 의뢰할 수 있도록 내용 일부를 보완하는 개정안임.